

1. 개정 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부실한 교육·운영에 대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에 따른 '별표4의2' 및 '별표5'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및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4의2)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 사유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추가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일반기준(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을 구체화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으로 명칭 변경
- 시행규칙 제12조의3제6항 개정('20.6)을 반영하여 별표4의2에 “제12조의3제4항”을 “제12조의3제6항”으로 개정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안 제12조의3제8항 관련 별표5)

-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개정('20.6)을 반영하여 별표5에 “제12조의3제6항”을 “제12조의3제8항”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 예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12조의3제4항 관련)”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적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별표 4의2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	--	----	------	------

별표 5의 제목 중 “(제12조의3제6항 관련)”을 “(제12조의3제8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적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않거나 1년 이상 운영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 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 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 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별표 5]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분야	교육과목	계	이론	실습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계		130	78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4 8 4 10 4 4	4 6 4 6 4 4	- 2 - 4 - -
	산림치유 자원 이해	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8 6 6 6 4	4 6 6 6 4	4 - - - -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수요조사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프로그램 평가	8 24 10	4 6 4	4 18 6
	기획·관리	조직 운영·관리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산림치유리더십	4 6 8	4 2 4	- 4 4
	발표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숍)	6	-	6
	계		158	106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8 6 6 10 6	8 6 6 4 6	- - - 6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 이해	8 12 8 8	8 6 4 4	- 6 4 4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산림스포츠의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응급처치	12 8 12 12	4 4 4 6	8 4 8 6
	기획·관리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산림치유 시설 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8 8 8	8 6 4	- 2 4
	선택과목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18	18	-
	계		158	106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8 6 6 10 6	8 6 6 4 6	- - - 6 -

* 비고

1. 교육생은 각 양성과정에 따른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해야 하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양성기관에서는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